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14.7.1.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1) 발급의무금액 확대

2014.7.1.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2014.7.1.이후부터는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 발급의무금액 30만원 → 10만원 이상 확대는 2014.1.1. 관련 세법이 개정되었으며, 2014.7.1.이후 거래분부터 시행됨

2) 발급의무 업종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3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전문직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통 주점업, 무도유통주점업, <u>관광숙박 시설 운영업</u>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육학원, 기타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 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 임대업, 이사화물운송 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 밑줄 친 업종은 2013.10.1.이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3) 발급시 유의사항

-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야 합니다.

4)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 2013.1.1.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30만원 이상(2014.7.1.이후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발급의무가 있으며,
☞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30만원(2014.7.1.부터는 10만원) 미만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상대방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 시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구분	발급의무 위반	불이익
미발급	30만원(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발급 거부	30만원(1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요구를 거부한 경우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등
허위 (가공) 발급	현금영수증을 허위 또는 가공으로 발급한 경우	허위 · 가공 발급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미발급과태료 부과 사례

- ① 공인중개수수료 50만원 현금 수령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 해당금액의 50%(25만원) 과태료 부과
- ② 이삿짐센터가 포장이사비 20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 해당금액의 50%(100만원)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1) 가맹점 가입기한

-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 그 밖의 업종 사업자
 - 2013.10.1 전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었으나
 - 2013.10.1 이후부터는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일(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 단, 2013.10.1 이전 개업자는 2013.12.31까지 가입해야 함
- 사업서비스업(전문직사업자), 보건업
 -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일(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 미가입시 불이익

-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의 해당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미가맹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맹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1%

3) 가맹점 가입방법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가맹점은 단말기 설치업체에 연락하여 현금 영수증발급장치 설치를 요청하시면 되며, 신용카드미가맹점은 카드가맹점을 가입하시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PC를 이용한 가입방법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 가입신청 메뉴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상 호	홈 페 이지	연락처
(주)엘지유플러스	taxadmin.dacom.net	1544-7772
한국정보통신(주)	www.kicc.co.kr	1600-1234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www.moneyon.com	1544-3850, 7300
(사단법인)금융결제원	www.kftcvan.or.kr	1577-5500
나이스정보통신(주)	taxsave.nicevan.co.kr	02)2187-2700



전화를 이용한 가입방법

세미래콜센터 ☎ 126(②현금영수증) ARS를 이용하여 가맹점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126 ②번(현금영수증) → ②번 (상담센터 연결) → ①번(한국어) → ④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 비밀번호 입력(4자리) → ①번(가맹점가입)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



1) 가맹점 스티커 부착 안내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 · 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가맹점 스티커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이 스티커 미부착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스티커는 관할세무서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및 발급 혜택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 신고포상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거부 위반사실을 신고한(거래일로부터 5년 내) 신고자에게 사실확인을 거쳐 해당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미발급 : 건당 300만원, 연간한도 1,500만원

발급거부 : 건당 50만원, 연간한도 200만원

※ 미발급 포상금 지급 사례

- 교습 학원비 70만원에 대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미발급금액의 20%인 14만원 포상금 지급
 - 예식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사업장의 현금영수증 500만원 미발급 신고 → 미발급금액의 20%인 100만원 포상금 지급
- * 미발급신고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가능

2)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 * 연간 세액공제한도 : 500만원, 법인사업자는 제외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대해 발급건당 20원의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타 자주하는 질문

Q1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확인방법?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esave.go.kr)에 로그인 후 「가맹점-매출내역 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2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거래금액 기준은?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 받은 경우에도 동일거래로 합산합니다.

(예 : 총 거래금액 50만원을 5회에 걸쳐 10만원씩 지급받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은 50만원임)

Q3

거래일자와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을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예 : Q2 사례의 경우 5회에 걸쳐 10만원씩 현금을 지급 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Q4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가맹점에게는 50% 과태료 부과 및 미발급 사실 제보자에게는 20% 포상금을 지급함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www.taxesave.go.kr
m.taxesave.go.kr